

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4-3)

□ 3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11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급 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종업원 분 주민세 신고 납부 ▪ 근로, 사업, 퇴직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4대보험료 납부
15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5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폐업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4월 1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¹⁾ ▪ 2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지급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월 귀속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2월 지급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1) 일반법인 - 4월 1일까지

- 2023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연결납세법인 - 4월 30일까지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²⁾
-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전환내국법인)
- 위 전환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2)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
 -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그러나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감사가 아닌 임의감사 또는 법정감사의 경우라도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에는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검증대상 검토항목

- (1)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처리 항목
- (2) 상품권 과다 매입 후 업무무관 비용으로 지출하는 항목 및 상품권으로 접대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대장 작성여부
- (3) 임원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기준 초과여부

3. 국세청 사후검정 사례

- (1) 사적으로 사용 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
 -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함.
- (2) 업종구분 오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분 추징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영위 업종과 신고서상의 업종이 다름을 확인하고 감면분 추징
-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지급한 사례
 - 해외현지법인,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추징함.

[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신철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채수 올림